

2017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따라, 『2017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』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17일

인사혁신처장

1.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

- 시험일시 : 2017. 2. 25.(토) 10:25 ~ 18:00 (1, 2, 3교시)
- 시험장소 : 서울 언남고등학교 (서울시 서초구 소재)
※ 참고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2.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

구분	시험시간		시험과목
수험생교육(방송)	09:45 ~ 10:25	40분	09:45까지 시험실 입실
1교시	10:25 ~ 11:55	90분	언어논리영역
중식·입실	11:55 ~ 13:30	95분	13:30까지 시험실 입실 (수험생 교육 : 13:30 ~ 14:00)
2교시	14:00 ~ 15:30	90분	자료해석영역
휴식·입실	15:30 ~ 16:00	30분	16:00까지 시험실 입실 (수험생 교육 : 16:00 ~ 16:30)
3교시	16:30 ~ 18:00	90분	상황판단영역

3. 응시자 준수사항

[일반사항]

1. 시험당일 **09:45까지**(2교시 13:30까지, 3교시 16:00까지) 해당 시험실의 **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** (08:30 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)
2.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2·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3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**(사이버국가고시센터[<http://gosi.kr/>]→마이페이지→원서접수내역→응시표출력에서 출력가능)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)을 **반드시 소지**하여야 합니다.
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4. **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시험시간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
(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)
5. **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**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6. 시험 전일까지 **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※ 지정된 응시번호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
7. **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8. **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**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소리 등)는 **자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 내에서는 **흡연을 할 수 없으며,**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9.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폰, 태블릿PC, 스마트시계,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.
10.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1.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[화장실 이용 사전신청제 운영관련] : 붙임 1 참조

1.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화장실 이용을 사전신청 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.
2. 기 신청한 "화장실 이용 사전신청" 여부는 변경 불가합니다.
3. 화장실 이용 신청자들은 별도 시험실에 함께 배정되며, 같은 시험실을 이용하는 타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및 이동으로 인한 시험 중 소음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.
4.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조치시간 및 실제 이용한 시간은 본 시험의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.
5.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대(시험 시작후 30분·종료전 20분을 제외한 시간 / 과목별 10:55~11:35, 14:30~15:10, 17:00~17:40)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

1. 득점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"컴퓨터용 흑색 사인펜"을 사용하여 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
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보기 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◐ ⊗ ◑ ◒ ◓ ◔ ◕ ◖ ◗ ◘ ◙ ◚ ◛

2. **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3.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인쇄된 **성명, 응시직렬, 응시지역, 시험장소, 응시번호, 생년월일**이 응시자 본인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**(책 형)**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**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,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(1개)을 "●"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**
 - 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**(필적감정용 기재)**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
 - **(자필성명)**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**(교체답안지 작성)**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 상단 책형란에 해당 책형(1개)을 "●"로 표기하고, **성명, 응시번호, 생년월일**을 빠짐없이 직접 한글과 숫자로 작성해야 합니다.
 - ※ 작성한 답안지는 **1인 1매만** 유효하며, 교체답안지 내 **응시번호, 생년월일 번호 표기(●)**는 생략됩니다.

- 4 시험이 시작되면 **문제책의 과목명과 답안지 일치 여부, 문제 누락·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**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5.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**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해야 하며, **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.**
 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**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.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 - 다만, **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**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**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**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6. 답안지는 **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**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**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 ■ ■ ■ ■)**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제5호, 제7호 위반행위

-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 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제4호 위반행위

-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 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
*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.

*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합격자 발표 안내

○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<http://gosi.kr>)에 게시합니다.

시 험 명	합격자 발표일
2017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	3. 29.(수)

※ 채점일정에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

[참고] 서울 언남고등학교 약도



○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13길 35 언남고등학교

※ 대중교통 이용 시

- ① 지하철 양재역(3호선·신분당선) 10번출구 ⇒ 마을버스 서초09 ⇒ 언남중고교 정류장 하차
- ② 지하철 양재역(3호선·신분당선) 7번출구 ⇒ 마을버스 서초18 ⇒ 언남중고교 정류장 하차
- * 서초09·서초18 버스는 탑승정류장이 다르므로 주의
- ③ 지하철 양재시민의숲역(신분당선) 2번출구 ⇒ 도보 15분

※ 문의처

-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(044-201-8376,8374)